

# 대법원 2023도1759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제20대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이 공모하여,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여당 등을 지지하는 이른바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고,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하게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피고인 5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594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사건의 개관

- ▣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청와대 정무수석실 공무원들(정무수석,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치안비서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경찰청 지휘부(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정보국장, 정보심의관)가 공모하여, 경찰청장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소속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보를 수집, 분석한 정보 보고를 작성한 후 청와대에 배포하게 함

###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 정보경찰(정보2과 계장, 분석관)들로 하여금 제20대 총선 관련한 정보 보고를 작성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피고인 5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sup>1)</sup>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기소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1, 4, 7은 경찰청 정보국장,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2012년 제18대 대선, 재14년 제6회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재보궐선거** 관련한 정보 보고를 작성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 1, 2, 3, 4, 7은 경찰청 정보국장,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보**(진보교육감, 전교조 등 이른바 좌파제압 및 보수단체 등 우파지원)보고를 작성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경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2.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 1~4, 6~8 전부 유죄, 피고인 5 면소

- 피고인 1: 징역 1년 2월 **실형**(제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sup>2)</sup>에 따라 분리선

1) 대법원 2019도5186 판결[일부 파기환송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확정됨]

고)

- 피고인 2, 3, 4, 6, 7, 8: 징역형의 집행유예
- 피고인 5: 면소

#### ▣ 원심

##### ● 피고인 1 ▶ 파기자판

- **파기사유** : 형이 너무 무거움(이 사건 이전에도 정보경찰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편향적인 정보활동을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
- **피고인 1**: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2, 3, 4, 6, 7, 8의 항소 ▶ 항소기각
- 검사의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항소 ▶ 항소기각
- 원심은 피고인 1의 양형부당 항소만 받아들여 감형한 것 외에는 제1심의 유죄판단과 면소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제

#### 2)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신고하여야 한다.

20대 총선 개입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의 유죄 판단 이유 ➡ 피고인들은 정보경찰들의 정보활동이 선거 운동 계획 수립 등 정권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및 경찰청 조직 내 의사전달과정과 보고·지시 체계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공모·실행하였음
- 원심의 면소 판단 이유 ➡ 피고인 5는 동일한 사실관계(제20대 총선 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인들(면소를 선고받은 피고인 5 제외)이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고, 검사는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죄수 판단 및 피고인 5에 대한 면소 판단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 유무
- ▣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 ▣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경찰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 ▣ 피고인들에 대한 죄수 관계 및 피고인 5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당부

####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들(피고인 5 제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피고인들(피고인 5 제외)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

- 피고인들(피고인 5 제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 지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의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원심의 죄수 및 면소 판단 부분)

- 피고인 5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피고인 1, 2, 3, 4, 7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제20대 총선 개입 정보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형의 선고와 분리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1개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6, 8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이의 죄수 판단 및 면소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